|  |  |  |
| --- | --- | --- |
| **환경오염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2012년4월30일 환경보호부령 제20호 공포, 2012년 8월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입법목적】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관리수준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한다.  본 방법 중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이란 오염물 처리, 처분에 전문 종사하는 사회화된 유료서비스 혹은 쌀방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타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유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행정허가원칙】국가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자격허가를 실행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는 환경오염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조**【자격유형】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분류별,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생활오수, 공업폐수, 분진제거 및 탈황, 공업폐기, 공업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 불포함), 유기폐기물, 생활쓰레기, 자동연속모니터링 등 전문유형으로 구분된다.  자동연속모니터링시설 운영자격은 을급자격과 임시자격 두 가지로 분류하며 기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은 갑급자격, 을급자격과 임시자격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감독관리】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대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관리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 급 이상 지방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 소지단위(증서소지단위) 및 해당 운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운영교육】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에 종사하는 현장 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과 심사에 참가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현장 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육, 심사규범을 통일적으로 작성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의 교육과 심사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비준**  **제7조**【신청조건】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혹은 을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독립적인 기업법인자격 혹은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2）규정된 수와 전문적인 기술직함을 구비한 기술인원 및 운영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한다.  （3）1년 이상 연속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실천에 종사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자신의 운영활동과 상응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분류, 급별조건이 규정한 기타 요구.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을 신청한 단위는 전 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제출자료】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본 단위의 등록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자격증서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혹은 사업단위 법인증서 사본  （2）전년도 단위재무현황보고 혹은 기타 자금신용증명  （3）기술인원의 전문기술자격증서 사본, 오퍼레이터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교육증서 사본과 채용계약서 사본  （4）실험실 혹은 검사장소 및 검측능력에 대한 증명  （5）돌발환경사건에 대한 응급대비책  （6）규범화 운영자격보장시스템에 관한 증명  （7）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사례. 이에는 운영프로젝트 간략소개, 운영위탁계약서, 사용자의견, 위탁운영프로젝트 비안(备案)표, 자격이 있는 단위에서 제출한 위탁운영계약 내의 시설운행검측보고서 포함  （8）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의 등급, 분류조건 요구에 따른 기타 증명자료.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전 항 중의 제(7)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갑급자격 심사절차】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자격에 대한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신청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신청자료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제출한 의견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통지한다. 조건이 부합될 경우에는 비준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공고한다.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 자격을 신청한 단위에 대해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제10조**【을급, 임시자격 심사비준절차】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자격과 임시자격의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자격 혹은 임시자격 신청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비준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을급 혹은 임시자격증서를 발급하기로 비준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자격증서 사본을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11조**【현장심의】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조직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심사 과정의 필요에 따라 신청단위 및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증서 내용】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된다.  （1）법인명칭, 법인대표자, 공상등록등기 혹은 사업단위 등록주소  （2）운영유형 및 급별  （3）유효기간  （4）증서발급일자와 증서번호  （5）심사비준부문의 명칭, 직인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제13조**【자격효력】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을급자격과 임시자격은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각 지역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규정한 조건 외에 임의의 명의로 자격심사 사전조건을 설치하거나 심사비준과정에 임의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룹회사와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소유한 자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 소재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증서 소지단위 및 비독립법인의 분공사가 운영자격증서나 혹은 기타 비슷한 운영허가의 중복신청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자격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 유효기간 및 연장】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과 을급자격의 유효기한은 5년이고 임시자격의 유효기한은 2년이다.  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의 유효기한 내 각 연도 관리심사 중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경우 자격 유효기간 완료 전 6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자격연장을 신청하고 증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은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스스로 효력을 잃게 되며 연장할 수 없다.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임시자격 소지단위는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을급자격 혹은 갑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자격 재 신청】하기 내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원 증서발급기관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재 신청해야 한다.  （1）운영 전문유형을 증가할 경우  （2）임시자격을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3）을급 자격을 갑급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4）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연장하지 못한 경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임시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급자격 혹은 을급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내에 같은 유형의 임시자격을 재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자격변경】증서 소지단위가 분리하거나 합병하거나 혹은 법인명칭, 법인대표, 등록주소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집조 혹은 사업단위법인증서를 발급받은 일자부터 3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 변경신청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변경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사본 혹은 사업단위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한 사업단위법인증서 사본  （2）원 증서발급기관이 발급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3）분리, 합병한 단위는 기술인원 전문기술자격증서 사본, 오퍼레이터 직위교육증서 사본과 고용계약서 사본.  **제3장 운영관리**  **제17조** 【운영요구】증서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에서 규정한 유형에 근거하여 전국범위 내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18조**【기술평가】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위탁운영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안정적인 운행과 배출표준에 도달하는 필요조건에 대해 기술적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결과를 위탁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는 근거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계약서】증서 소지단위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탁단위와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서 소지단위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프로젝트비안표를 작성하여 시설소재지 현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비안해야 한다.  **제20조**【증서소지단위에 대한 요구】증서 소지단위는 위탁운영계약서의 규정과 국가의 환경보호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배출 오염물이 국가와 지역이 규정한 오염물배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21조**【연도평가】증서 소지단위는 매년 12월 31일전까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행상황, 시설의 완정상태, 오염물배출 표준도달상황, 2차오염방지상황, 시설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연도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운행심사】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에 등기한 증서 소지단위 및 운행하는 환경오염 정비시설프로젝트상황에 대해 연도 관리심사를 진행한다.  증서 소지단위는 매년 1월말 전에 본 단위 등기지역의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전년도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위등기지역 성급 행정구역 외에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증서 소지단위는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프로젝트 연도보교표를 카피하여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와 일상감독관리 및 현장검사상황에 근거하여 증서 소지단위에 대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매년 3월말까지 증서 소지단위의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과 심사상황을 국무원 환경보소주관부문에 비안하고 공고한다.  **제23조**【사고에 대한 응급처리】증서 소지단위는 반드시 위탁단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응급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건에 대한 응급준비, 응급처리와 사후회복 등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운행감독】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할지역관리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대한 관리를 일상 집법감독관리업무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형식의 검사와 실사 등 방식으로 증서 소지단위의 운영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인이 사인한 후 보관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증서 소지단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위법사실, 처리결과 등 사항을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감독관리조치】환경보호주관부문이 감독검사직책을 수행할 때 법에 따라 감독검사조치를 채용하는 외에 검사대상 증서소지단위에 운영자격증서 정본 혹은 부본의 원본, 기술인원 전문자격증서 사본, 현장관리인원과 오퍼레이터 직위교육증서, 노동관계증명, 업무운영관련 파일, 내부관리제도문서, 운행테스트와 운행조작기록, 시설운행평가보고 등 재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사대상 증서소지단위 및 운행을 책임지는 시설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일상적인 감독과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증서소지단위는 시설운행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의의 이유로 검사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기만하거나 허위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격철회】아래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발급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신청, 신고 혹은 해당 직책에 근거하여 본 부문에서 발급한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를 비준하였을 경우  （2）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 심사비준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본 방법이 규정한 심사비준권한을 초과하여 심사비준한 경우  （3）환경오염 정비시설자격 심사비준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날조할 경우  （4）신청인이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법으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한 경우  （5）법에 따라 철회해야 할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허가에 관한 기타 사항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증서소지단위에 위법행위가 있어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허가를 철회해야 할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증서발급기관에 허가 철회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감독관리인원에 대한 처벌】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업무직원이 하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를 발급한 경우  （2）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제멋대로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3）증서 소지단위에 대해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4）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관리업무 중에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혹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관리 업무 중에 상기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경위에 따라 통보 비평한다.  **제28조**【증서소지단위에 대한 처벌】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운영자격이 없는 단위에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  （2）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3）자격증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4）증서 소지단위가 제멋대로 원시검측데어터를 수정하고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5）증서 소지단위가 허위적인 환경오염한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6）운영자격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양도하거나 혹은 자격증서 신청과정에 허위로 날조할 경우  증서 소지단위가 전 항 중 (3), (4), (5), (6)호가 규정한 행위가 있으며 경위가 엄중하거나 혹은 남몰래 배출하거나 환경오염 정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엄중한 환경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증서발급기관은 해당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 운영자격증서를 회수 받은 단위는 3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29조**【기업평등조항】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을 취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시설】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하며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문서양식】하기 문서양식과 내용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2）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신청표  （3）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증서 변경신청서  （4）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상황 연도보고표  （5）환경오염 정비시설 위탁운영프로젝트 등록비안표  （5）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인원 직위교육과 심사합격증서  **제32조**【시행일자】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2004년 11월 8일에 반포한 <환경오염 정비시설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2012年4月30日环境保护部令第20号公布；自2012年8月1日起施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立法目的】 为提高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管理水平，维护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市场秩序，根据《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适用范围】 本办法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的活动。  本办法所称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是指专门从事污染物处理、处置的社会化有偿服务活动，或者根据双方签订的合同承担他人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管理的有偿服务活动。  **第三条**【行政许可原则】 国家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实行资质许可。  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的单位，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申请获得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并按照资质证书的规定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  未获得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的单位，不得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  **第四条**【资质类别】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实行分类、分级管理。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分为生活污水、工业废水、除尘脱硫脱硝、工业废气、工业固体废物（不含危险废物）、有机废物、生活垃圾、自动连续监测等专业类别。  自动连续监测设施运营资质分为乙级资质和临时资质两个级别，其他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分为甲级资质、乙级资质和临时资质三个级别。  **第五条**【监督管理】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实施统一监督管理，并对省级环境保护  主管部门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管理活动进行指导和监督。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持证单位（以下简称持证单位）及其运营活动实施监督管理。  **第六条**【运营培训】 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的现场管理人员和现场操作人员，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参加专门的培训与考核。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统一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现场管理人员和现场操作人员培训、考核规范。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组织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现场管理人员和现场操作人员的培训、考核。  **第二章 申请与审批**  **第七条**【申请条件】 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或者乙级资质的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独立企业法人资格或者事业单位法人资格；  （二）具有规定数量、具备相应专业技术职称的技术入员，以及运营现场管理人员和现场操作人员；  （三）具有1年以上连续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的实践，且能够保证设施正常运行；  （四）具备与其运营活动相适应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分类、分级条件规定的其他要求。  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临时资质的单位，应当具备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条件。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的具体条件，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另行制定。  **第八条**【提交材料】 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的单位，应当向本单位登记地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申请，填写资质证书申请表，并提交下列材料：  （一）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复印件或者事业单位法人证书复印件；  （二）上一年度本单位财务状况报告或者其他资信证明；  （三）技术人员专业技术资格证书复印件、现场操作人员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岗位培训证书复印件和聘用合同复印件；  （四）实验室或者检验场所及其检测能力的证明；  （五）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  （六）有关规范化运营质量保证体系的证明；  （七）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实例，包括运营项目简介、委托运营合同、用户意见、委托运营项目备案表、有资质的单位出具的委托运营合同期间设施运行监测报告；  （八）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分级、分类条件要求的其他证明材料。  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临时资质的，可以不提交前款第（七）项规定的材料。  **第九条**【甲级资质审批程序】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的审批。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受理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审查，签署意见，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材料和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签署的意见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审查，作出审批决定，并通知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对符合条件的，予以批准，颁发资质证书，并予以公告；对不符合条件的，不予批准，并说明理由。  对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的，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严格控制的原则，从严审批。  **第十条**【乙级、临时资质审批程序】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乙级资质和临时资质的审批。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受理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乙级资质或者临时资质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审查，作出审批决定。对符合条件的，予以批准，颁发资质证书，并予以公告；不符合条件的，不予批准，并说明理由。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批准颁发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乙级或者临时资质证书之日起30日内，将资质证书复印件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工作经费纳入财政预算。  **第十一条**【现场核查】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在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申请签署意见或者审批过程中，应当组织专家进行现场核查。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在审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申请过程中，可以根据需要对申请单位及其运营的环境污染治理设施进行现场核查。  **第十二条**【资质证书内容】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包括下列主要内容：  （一）法人名称、法定代表人、工商注册登记或者事业单位登记地址；  （二）运营类别与级别；  （三）有效期限；  （四）发证日期和证书编号；  （五）审批部门的名称、印章。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分为正本和副本，正本和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第十三条**【资质效力】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乙级资质和临时资质全国通用。各地不得在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的条件之外，以任何名义设置资质审批前置条件，也不得在审批过程中收取任何费用。  集团公司和具备独立法人资格的分公司，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分别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  环境污染治理设施所在地环境保护主管部门不得要求持证单位及其非独立法人的分公司重复申领运营资质证书或者申请其他类似的运营许可。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不得转让。禁止伪造、变造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  **第十四条**【资质有效期及其延续】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和乙级资质有效期为5年，临时资质有效期为2年。  持证单位在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甲级资质或者乙级资质有效期内的各年度管理考核中，没有违反法律法规或者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可以在资质有效期满前60日内，向原发证机关申请资质延续，换发证书。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临时资质有效期满后自动失效，不予延续。具备相应条件的，临时资质持证单位可以按照本办法第七条、第八条的规定，申请乙级资质或者甲级资质。  **第十五条**【资质重新申请】 有下列情形之一的，持证单位应当按照本办法规定的条件和程序，向原发证机关重新申请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  （一）增加新的运营专业类别的；  （二）临时资质升级为甲级资质或者乙级资质的；  （三）乙级资质升级为甲级资质的；  （四）资质有效期满而未获延续的。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临时资质有效期满，不符合升级为甲级资质或者乙级资质条件的，2年内不得重新申请同类别的临时资质。  **第十六条**【资质变更】 持证单位分立、合并，或者变更法人名称、法定代表人、登记地址等事项的，应当在领取新营业执照或者新事业单位法人证书后30日内，向原发证机关申请办理变更手续，填写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变更申请表，并提交下列材料：  （一）变更后工商行政管理部门颁发的营业执照复印件或者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颁发的事业单位法人证书复印件；  （二）原发证机关颁发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正、副本；  （三）单位发生分立、合并的，还应当提供技术人员专业技术资格证书复印件、现场操作人员岗位培训证书复印件和聘用合同复印件。  **第三章 运营管理**  **第十七条** 【运营要求】 持证单位可以按照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规定的类别，在全国范围内承接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业务。  **第十八条**【技术评估】 持证单位接受环境污染治理设施委托运营前，应当对该设施是否具备稳定运行和达标排放的必要条件进行技术评估，并以此作为签订委托服务合同的依据。  **第十九条**【委托运营合同】 持证单位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应当与委托单位签订委托运营合同，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  持证单位应当在委托运营合同签订后30日内，填写环境污染治理设施委托运营项目备案表，报设施所在地县级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二十条**【对持证单位要求】 持证单位应当依照委托运营合同的约定和国家有关环境保护的规定，保证环境污染治理设施正常运行，确保排放的污染物符合国家和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防止产生环境污染。  **第二十一条**【年度评估】 持证单位应当在每年12月31日前对所运营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行状况、设施完好情况、污染物排放达标情况、二次污染防治情况、设施运行中存在的问题及其整改方案等进行年度评估，并填写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情况年度报告表。  **第二十二条**【运行考核】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对在本行政区域内登记的持证单位及其运行的环境污染治理设施项目情况进行年度管理考核。  持证单位应当在每年1月底前，向本单位登记地的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提交上一年度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情况年度报告表。在单位登记地省级行政区域外有运营项目的，持证单位应当同时将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项目年度报告表抄报项目所在地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情况年度报告表和日常监督管理与现场检查情况对持证单位做出考核结论，于每年3月底前将持证单位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状况和考核情况上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予以公告。  **第二十三条**【事故应急】 持证单位应当协同委托单位，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等有关规定，做好突发环境事件的应急准备、应急处置和事后恢复等工作。  **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四条**【运行监督】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属地管理的原则，将对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的管理纳入日常执法监管工作范围，依照有关法律、法规和本办法的规定，通过书面检查和实地核查等方式，对持证单位的运营活动进行监督检查，并将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存档；发现违法行为的，责令其限期整改，依法予以查处，并通报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发证机关。  异地运营的持证单位发生违法行为时，违法行为发生地环境保护主管部门在依法查处的同时，应当将违法事实、处理结果等情况，向其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发证机关通报。  **第二十五条**【监管措施】 环境保护主管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除可以依法采取有关监督检查措施外，还可以要求被检查的持证单位提供运营资质证书正本或者副本原件、技术人员专业资格证书复印件、现场管理人员和现场操作人员岗位培训证书、劳动关系证明、有关运营业务的文档、内部管理制度文件、运行检测和运行操作记录、设施运行评估报告等材料，并进入被检查的持证单位及其负责运行的设施进行现场核查。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进行日常监督和现场核查时，持证单位应当如实报告设施运行情况，提供相关资料，不得以任何理由阻碍检查，不得隐瞒真实情况，不得提供虚假数据和资料。  **第二十六条**【资质撤销】 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发证机关可以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举报，或者依据其职责，撤销本部门作出的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  （一）对不符合规定条件的单位批准核发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的；  （二）违反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审批程序或者超越本办法规定的审批权限作出审批决定的；  （三）在环境污染治理设施资质审批过程中徇私舞弊、弄虚作假的；  （四）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的；  （五）应当依法撤销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的其他情形。  异地运营的持证单位发生违法行为，需要撤销其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的，违法行为发生地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向发证机关提出撤销许可的建议。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对监管人员的处罚】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向不符合本办法规定条件的单位颁发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的；  （二）发现未依法取得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的单位和个人，擅自从事运营活动不予查处或者接到举报后不依法处理的；  （三）对持证单位不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发现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不予查处的；  （四）在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管理工作中有其他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用职权行为的。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在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管理工作中有前款所列行为的，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情节轻重予以通报批评。  **第二十八条**【对持证单位的处罚】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整改，处2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一）委托不具有运营资质的单位运行其环境污染治理设施的；  （二）未取得资质，擅自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的；  （三）超出资质证书许可范围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的；  （四）持证单位擅自修改原始监测数据，提供虚假信息的；  （五）持证单位提交虚假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情况年度报告表的；  （六）伪造、变造、转让运营资质证书或在申请资质证书过程中弄虚作假的。  持证单位有前款第（三）、（四）、（五）、（六）项规定的行为且情节严重的，或者有偷排、不正常运营污染治理设施等严重环境违法行为的，发证机关应当收回其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  依照本办法规定被收回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的单位，3年内不得重新申请。  **第六章 附 则**  **第二十九条**【企业平等条款】 外商投资企业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申请取得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后，方可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活动。  **第三十条**【特别设施】 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处置经营活动的，应当依照《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的规定，申请获得危险废物经营许可，不适用本办法。  **第三十一条** 【文件格式】 下列文件的格式和内容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统一规定：  （一）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  （二）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申请表；  （三）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证书变更申请表；  （四）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情况年度报告表；  （五）环境污染治理设施委托运营项目备案表；  （六）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人员岗位培训和考试合格证书。  **第三十二条** 【施行日期】 本办法自2012年8月1日起施行。原国家环境保护总局2004年11月8日公布的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国家环境保护总局令第23号）同时废止。 |